

의안번호	2216648
의 퇴 인	신정훈의원
회 답 일	2026.2.25.
추계번호	26D0733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 설치 및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,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1,100만원(연평균 2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위원회 설치·운영	6	12	12	12	12	54	11
기본계획 수립	57	—	—	—	—	57	11
합 계	63	12	12	12	12	111	22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)	—시·군·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2	안 제10조(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)	—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 —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함	의무규정
3	안 제12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)	—통합특별시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4	안 제13조(신남방 경제수도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특례)	-통합특별시장은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-통합특별시는 신남방 국가와의 특화된 산업·교육·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,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4조(농업·농촌 발전기금 설치·운용)	-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·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·농촌 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며, 기금의 재원 및 용도,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	의무규정
6	안 제15조 ~안 제16조(국립목포대·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특례)	-국가는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목포대·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, 동·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여야 함 -국가는 국립목포대·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-국가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연합형으로 통합하여 연구 역량 향상,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국가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국가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7조(여수·순천 10·19 사건 정신 계승 및 지원 특례)	국가는 여수·순천 10·19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인권적 의미를 계승·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기념일지정, 피해보상, 기록물 보존·관리 활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8조(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)	-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지역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통합특별시장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)	○	
2	안 제10조(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)	×	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감사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및 사무국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3	안 제12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4	안 제13조(신남방 경제수도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특례)	○	
5	안 제14조(농업·농촌 발전기금 설치·운영)	×	기금의 재원,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특별시장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기금 설치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6	안 제15조 ~안 제16조(국립목포대·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특례)	×	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7	안 제17조(여수·순천 10·19사건 정신계승 및 지원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8	안 제18조(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,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- 위원회의 위원 총 20명 중 민간위원은 12명으로 가정
-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며,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(시행일을 고려하여 2026년은 2회 개최를 가정)
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안 제13조에 따른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은 유사 추계에 활용
한 2024년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용함
- 제정안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여 추계 첫해인
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
-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
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원회 설치(안 제6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2명에 대하여 연 4회 회
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
- 추계 결과, 안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
2026년 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원회 민간위원 수당	6	12	12	12	12	5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본계획 수립(안 제13조)

- 안 제13조에 따른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
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의 “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”
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,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¹⁾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 첫해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라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5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	57	-	-	-	-	5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,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1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원회 설치·운영	6	12	12	12	12	54
기본계획 수립	57	-	-	-	-	57
합 계	63	12	12	12	12	1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1) 「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(의안번호: 2213471)」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